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 안 번 호 제2925호

제출년월일 2021. 11. 17. 제 출 자 김 포 시 장

1. 심사경과

○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7일 김계순 의원님, 홍원길 의원님,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○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시민들의 미디어리터러시¹⁾ 교육 등을 통한 미디어 환경 활성화를 지원하고 영상·영화 등의 미디어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지원(안 제4조~제5조)
- 보조금 지원 근거와 지도감독(안 제6조~제7조)

4. 검토의견

○ 본 안건은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영화·영상 등의 미디어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미디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상위법 저촉 및 특별한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¹⁾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고 미디어 작동 워리를 이해하며, 미디어를 비판하는 역량, 미디어를 적절하게 생산・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함.